

#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

- 제정 : 1999. 9. 1.
- 개정 : 2005. 3. 1.
- 개정 : 2011. 6. 30.
- 개정 : 2013. 11. 1.
- 개정 : 2017. 3. 1.
- 개정 : 2019. 6. 18.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수원과학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의 대학입학전형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대학입학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기능)**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관리 대책 수립 및 시행
2. 대학입학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내부 통제
3. 대학입학 전형의 사전, 중간, 사후 자체감사 및 점검
4. 수험생의 이의제기에 대한 내부 감사
5. 기타 입학전형 업무 및 운영 사항의 점검 및 개선

**제3조(구성)** 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되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

**제4조(회의)**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심의사항에 대한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**제5조(회의록)**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**제6조(간사)**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.

**제7조(기타)**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

3-0-12 대학입시전형공정관리대책위원회 규정

① (시행일) 본 규정은 199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② (경과조치)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제반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해 처리된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본 규정은 2019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